한국수자원공사 협력사 행동 가이드라인

서문

한국수자원공사는 ‘(E) 인간과 자연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추구한다.’, ‘(S) 상생을 통해 사회의 공동선을 지향한다.’, ‘(G) 소통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한다.’, ‘(+) 현재와 미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경영한다.’라는 ‘ESG+경영원칙’을 이행함으로써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중요한 책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으로서의 공익적 역할을 고려하여, ‘ESG+경영원칙’을 가치사슬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협력사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윤리, 인권과 노동, 안전보건, 환경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가치를 함께 창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공동의 가치와 원칙을 바탕으로 협력사와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기준으로 삼기 위해 협력사 행동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권고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행동 가이드라인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지속가능한 가치사슬 구축과 ESG 경영 확산을 위하여 협력사가 참고할 수 있는 윤리, 인권, 안전보건, 환경 및 경영시스템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적용범위)

① 한국수자원공사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 및 그 임직원과 대리인 등 이해관계자가 본 행동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권고합니다.

② 협력사는 자사와 거래하는 하위 협력사(2차, 3차 협력사 포함)도 본 행동 가이드라인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제3조 (법규 및 국제기준 준수)

① 협력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대한민국의 관련 법규 및 사업이 이루어지는 국가에서 적용되는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다음의 기준과 원칙을 존중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10대 원칙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책임 있는 기업행동을 위한 실사 가이드라인(OECD Due Diligence Guidance)
-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

③ 협력사는 상기 기준을 자사의 경영활동 및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고 관련 정책 및 절차를 수립·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④ 본 행동 가이드라인과 관련 법규 또는 국제기준 간 내용이 상이한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을 따를 것을 권장합니다.
⑤ 협력사는 본 조에서 규정한 기준이 자사의 하위 협력사 및 가치사슬 전반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2장 행동 기준

제4조 (윤리 기준)

① 부패 및 뇌물 금지
협력사는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품 또는 기타 형태의 부당한 이익 제공을 비롯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패, 갈취, 횡령, 뇌물 수수, 상납 등의 비윤리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에 대한 정책과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구성원들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② 공정거래 준수

협력사는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해야 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담합 행위나 제3자와의 불법 하도급 거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경쟁사와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③ 이해충돌 방지

협력사는 개인의 사익이 회사의 이익에 우선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적절히 보고하고 해결하기 위한 절차 마련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④ 정보보호

협력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및 업무 관련 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정보의 수집·저장·처리·전송·파기 전 과정에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또한 정보 유출 및 침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신속한 보고와 대응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⑤ 지식재산 보호

협력사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한국수자원공사 및 거래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등을 존중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자료 및 정보는 사전 승인 없이 사용, 복제, 외부 제공 또는 보관하여서는 안 됩니다.

⑥ 공익신고자 보호

협력사는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당사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협력사는 공익신고자가 신고 취소를 강요받거나 신고로 인한 불이익 및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마련·운영할 것을 권고합니다.

제5조 (인권 기준)

① 강제노동 금지

협력사는 모든 구성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 감금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자유를 제한하여 비자발적인 근로를 강요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신분증, 여권 또는 노동허가증을 강제로 맡기도록 요구하거나 보관하여 개인 활동을 제약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아동노동 금지

협력사는 각 국가 및 지역 법규에서 정한 최저 고용연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적법한 서류를 통해 임직원 및 취업지원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차별 금지
협력사는 모든 구성원에 대하여 성별, 인종, 국적, 연령, 출신지역, 학력, 종교, 혼인 여부,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용, 승진, 보상, 징계, 교육 및 훈련 등 고용 전반에 있어 정당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④ 임금 및 복리후생 보장
협력사는 국가별 법규 및 제도를 준수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급여 내역서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협력사가 근로자에게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할 것을 권고합니다.

⑤ 근로시간 준수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을 연장할 경우,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⑥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협력사는 각 국가의 노동 관련 법규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권리, 노동조합을 결성·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⑦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금지
협력사는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행위,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모든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권침해 예방,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제재 조치에 관한 절차 마련·운영과, 신고 채널 구축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6조 (안전보건 기준)

① 위험성 평가 및 예방조치
협력사는 위험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식별·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작업공간의 위험요인 및 안전수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재해 및 질병 예방·관리
협력사는 산업재해 및 직업성 질병을 예방·관리·추적·보고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재해 또는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와 재발방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③ 비상 대응 체계 구축
협력사는 화재, 자연재해, 안전사고 등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비상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비상훈련 실시, 대피로 및 소방시설과 같은 안전설비의 구축·점검 등을 이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④ 작업환경 및 설비 안전관리
협력사는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해·위험 설비에 대한 예방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⑤ 근로자 건강 관리
협력사는 과도한 육체노동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부하를 관리하고, 필요 시 공정개선 및 작업순환 등의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생적인 근무환경과 휴게시설을 제공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 건강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⑥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체계 구축
협력사는 안전보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활용하여 정기적인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면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7조 (환경 기준)

협력사는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오염 예방,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지속적인 환경 개선 성과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① 환경 법규 준수 및 인허가 관리
협력사는 사업이 수행되는 국가 및 지역의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필요한 환경 인허가의 취득·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② 수자원 관리
협력사는 용수 사용량 및 폐수 배출량을 측정·관리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질오염 방지와 수자원 사용 절감 및 재이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③ 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리
협력사는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관리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목표 수립과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④ 유해화학물질 관리
협력사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현황을 파악하고, 구매·운송·보관·사용·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히 표시·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⑤ 폐기물 및 오염물 관리
협력사는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며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자원 재활용 및 재사용 확대를 우선하여 고려합니다.

제3장 경영시스템

제8조 (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협력사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정당한 요구사항에 성실히 협조하며, 인권·노동, 안전보건, 환경, 윤리 분야에서 책임 있는 경영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협력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영한 경영시스템 구축·운영으로,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책임있는 경영 실현을 지향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① 정책 및 준수의지 수립
경영진의 승인 하에 관련 분야에 대한 정책 및 준수의지를 수립하고 이를 조직 내에 공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② 책임 및 역할 지정
경영진은 해당 시스템의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하고,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③ 법규 및 요구사항 관리
관련 법규 및 한국수자원공사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식별·관리하고, 내부 절차 및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④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사업 운영과 관련된 환경, 안전보건, 인권 및 윤리 리스크를 식별·평가하고, 중요도에 따라 적절한 관리 및 통제 방안을 수립·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⑤ 목표 및 성과관리
사회적·환경적 성과 개선을 위한 목표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를 정기적으로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⑥ 교육 및 내부 확산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법규, 정책 및 절차 준수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조직 내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⑦ 의사소통 및 이해관계자 참여
근로자가 부당한 처우 없이 의견 및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근로자와 하위 협력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와 정책, 성과 및 주요 이슈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⑧ 문서 및 기록 관리
경영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문서 및 기록을 적절히 작성·보관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⑨ 점검, 감사 및 지속적 개선
경영시스템의 운영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수립·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9조 (리스크 관리 및 가치사슬 관리)

협력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리스크 관리 및 가치사슬 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① 환경, 안전보건, 인권 및 윤리 관련 리스크를 식별·평가하고 고위험 영역을 우선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②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가 이루어질 경우 성실히 협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하위 협력사에 본 행동 가이드라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관련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정보 관리 및 데이터 제출)

협력사는 환경·안전보건 등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투명한 제공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①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협력사는 환경, 안전보건 등 주요 ESG 관련 데이터를 측정·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② 주요 데이터 관리 및 제출
협력사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정당한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는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온실가스 배출량
- 에너지 사용량
- 수자원 사용량
- 산업재해 발생 현황

③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
협력사는 제출하는 정보의 정확성, 일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근거 자료를 함께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4장 점검 및 관리

제11조 (이행 점검)

① 자체 점검 및 관리
협력사는 본 행동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하고, 미비사항을 식별·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② 하위 협력사 점검
협력사는 하위 협력사와의 사전협의를 바탕으로, 하위 협력사의 본 행동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하위 협력사가 요청할 경우 개선안을 권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12조 (개선 및 협력)

한국수자원공사는 협력사와 사전협의를 통해, 협력사의 본 행동 가이드라인 이행 수준을 확인하고 책임있는 가치사슬 관리와 협력사의 이행 수준 개선을 위하여 개선안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는 이행 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노력하여야 합니다.

① 개선 및 재발 방지 노력
협력사는 법규 위반, 리스크, 미비사항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및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개선조치 계획(Corrective Action Plan)을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② 개선조치 이행
협력사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개선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한국수자원공사에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협의 기반 개선 이행
협력사는 한국수자원공사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개선과제를 도출할 수 있으며, 이를 단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④ 지속적 개선 및 관리
협력사는 관련 법규 및 경영 여건을 고려하여 인권, 안전보건, 환경 및 윤리 분야의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5장 교육 및 서약

제13조 (교육)

협력사는 본 행동 가이드라인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정책, 절차 및 법규 준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교육 결과가 조직 내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14조 (서약)

협력사는 본 행동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협력사에게 아래의 준수 서약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타 계약 등 절차에서 협력사가 서약에 준하는 의사표현을 한 경우 서약서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협력사 행동 가이드라인 준수 서약서

우리 회사는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 국내외 관련 법규 및 국제 기준을 준수하고, 「한국수자원공사 협력사 행동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한국수자원공사 협력사 행동 가이드라인 및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2. 금품, 향응, 편의 제공 등 어떠한 부당한 이익도 제공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및 담합 행위를 하지 않으며, 불법 하도급 등 공정 거래 질서를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4.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한국수자원공사 및 거래 관련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않으며, 이를 이용한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5. 인권, 노동, 안전보건, 환경 및 윤리와 관련된 기준을 준수하고, 책임 있는 경영활동을 실천하겠습니다.
6. 가치사슬 전반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사용, 수자원 이용, 산업재해 등 정보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성실히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 하위 협력사에도 본 행동 가이드라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가치사슬 전반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 협력하겠습니다.
8. 입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모든 자료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며, 위조·변조 또는 허위 제출을 하지 않겠습니다.
9. 본 행동 가이드라인의 이행 수준 점검과 개선활동 이행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본 서약에 따라 관련 법규 및 계약 조건, 「한국수자원공사 협력사 행동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관련 법규 및 계약 조건을 따르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회사명 : _____

대표자 : _____ (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귀하